문서번호	민원여권과-11	
문지원오 	89	
결재일자	2016.1.12.	
공개여부	부분공개	
보도여부		

:	주무관	민원행정팀장	민원여권과장	행정관리국장
	양미경	정성빈	김귀철	01/12 고한석
협 3	2			

2016년 제1회 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보고

2016.1.12.

강 북 구 (민원여권과)

2016년 제 1회

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보고

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제1회 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.

추지근거

- 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
- □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9조
- □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6조

Ⅱ 심의회 개요

- □ 일 시: 2016. 1. 11.(월) 10:00
- □ 장 소: 행정관리국장실
- □ 참 석
 - 위 원 (재적위원 7명 중 5명 참석)
 - 행정관리국장(위원장), 감사담당관, 민원여권과장
 - 정수연 위원, 이경아 위원
 - 관계공무원
 - 주관부서 : 주차관리과장
 - 민원여권과 : 민원행정팀장(간사), 정보공개담당자(서기)

- □ 안 건 : 비공개 결정 관련 이의신청 1건 및 비공개 결정 예정 1건
 - 안건 1 : 법인택시업체의 택시기사들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지급내역서 비공개 결정 건 (주차관리과)
 - 안건 2 : 법인택시업체의 택시기사들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택시회사명, 부가세경감액, 급여포함액 내역 비공개 예정 건(주차관리과)

심의 결과

- □ 안건1 : 부분공개 결정
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급내역서 중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(성명, 계좌번호, 서명 등)를 제외하고 공개
- □ 안건2 : 공개 결정
- 붙임 1. 심의의결서 1부.
 - 2. 회의록 1부. 끝.